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6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민형배 · 조계원 · 문정복  
김우영 · 조인철 · 정준호  
안도걸 · 주철현 · 이성윤  
최혁진 · 양부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장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심의의 장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마이크 등 별도의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가 설치한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은 개별 의원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국회가 관리하지 않는 음향장비를 활용해 의장의 사회권을 우회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도, 국민의 신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  
·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 ·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8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본회의장 안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제1항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본다.

1. 회의장 안에서 직접 음성을 증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이크, 스피커, 그 밖의 음향 설비로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회가 설치한 설비 외의 것

2. 그 밖에 의장이 회의 진행 또는 의사진행 통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의 반입 금지)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의 반입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의원은 의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설비를 본회의장 안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제1항 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으로 본다.</p> <p>1. 회의장 안에서 직접 음성을 증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 이크, 스피커, 그 밖의 음향 설비로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회가 설치한 설비 외의 것</p> <p>2. 그 밖에 의장이 회의 진행 또는 의사진행 통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설비</p>